

6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

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(만14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로서 이하 정보주체로 표기)은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
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라 정책원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책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(사유 소멸 시 즉시 열람가능)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다.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–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
–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
–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
–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
–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②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
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가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나.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다.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

③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요구

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가. 정정 :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

나. 삭제 :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

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

정보주체는 정책원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- 가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나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다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라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마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바.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
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⑦ 개인정보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요구 방법

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책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가.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

청구인(정보주체 또는 대리인) → 온라인청구 →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→ 이관 → 국가생명윤리정책원 → 10일 이내 결과 통보

※ 개인정보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

나.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나, 정책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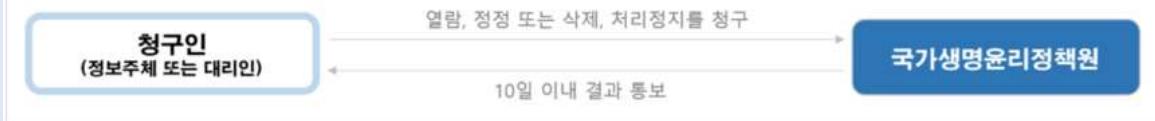
청구인(정보주체 또는 대리인)이 열람, 정정 또는 삭제,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10일 이내 결과 통보

※ 관련서식 :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별지8호~제11호 서식

가.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



나.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서식]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인터넷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나, 국가생명 윤리정책원 본원 또는 지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



[별지 제8호서식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

[별지 제9호서식] 개인정보 (열람, 일부열람, 열람연기, 열람거절) 통지서 다운로드

[별지 제10호서식] 개인정보 (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다운로드

[별지 제11호서식] 위임장 다운로드

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

-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 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) 제출
-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
-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

⑧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접수·처리부서 안내
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을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이의 제기 등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정보

- 부서 : 경영지원본부 정보화운영팀
- 연락처 : 02-778-7002 ○ 팩스 : 02-737-6006 ○ 이메일 : 2jaeho@nibp.kr

⑨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

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